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22.07.26. 기획재정부령 제925호 공포) -

기획재정부장은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령 제925호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이유

기획재정부는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5일에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해당 규칙을 제정

II. 주요내용

1. 부과대상 및 부과범위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덤핑방지관세율: 공급자별로 20.10%~25.00%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미국	다우 케미컬(Dow Chemical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00
	이스트만 케미컬(Eastman Chemical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의 공급자	
프랑스	이네오스(INEOS)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0.10
	그 밖의 공급자	

2. 시행일

- 2022.07.26.

3. 적용기간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

4. 적용범위(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 2021년 12월 6일 이후 수입신고 된 물품부터 적용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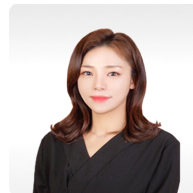
[붙임1] 기획재정부령 제925호(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Contact



김성근 관세사

T 070-4353-5152
E skkim2@esein.co.kr



전소연 관세사

T 02-6011-3101
E syjeon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